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76214 판결 [보증금반환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

담당변호사 한두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15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가 2022. 6. 1.에 피고와 인천 서구 C 제8층 D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, 임대차기간 2022. 7. 7.부터 2024. 7. 6.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, 위 계약이 2024. 7. 6.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4. 7. 15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한철